

## 12. 새해 달라지는 內容

### 건 설

#### ▲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업체에 근무하며 1년이상 무주택인 가구주는 주택구입자금으로 최고 1천4백만원, 전세금으로는 1천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 ▲ 토지거래전산화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 내용이 전산입력돼 투기단속 및 토지정책 자료로 활용된다.

#### ▲ 토지가격심사제폐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시 지금까지는 공시지가의 1백20% 이내로 거래한 것에 대해 신고접수 또는 허가를 했으나, 내년부터는 가격심사 없이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된다.

#### ▲ 농지 및 임야거래 절차간소화

도시 및 준도시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매매증명과 임야매매증명 발급은 생략된다.

####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의무화

내년 4월부터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 ▲ 국토이용관리제도 변경

용도지역이 10개에서 5개로 단순화되고, 이중 준농림지역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외한 여타 공장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절차가 줄어든다.

▲ 공시지가 조사제도 개선

공시지가 표준지를 종전보다 10% 늘어난 33만필지로 확대, 개별지가 산정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 지역별로 지가조사 전담평가사를 지정, 운영한다.

▲ 외국인 토지취득 확대

외국 유통업체 등 서비스업의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이 일정범위내에서 가능해지고, 사원용 택지구입도 허용된다.

▲ 고속도로 통행료 후불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무인자동화 톨게이트에 무인자동화 발급기가 완비되는 대로 통행료 징수방법이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바뀐다.

**내무부**

▲ 주민등록제도 개선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출신고는 폐지되고 전입신고만 하면되고 주민증 분실신고도 지-파출소 경유제를 폐지한다.

▲ 지방세제도 개선

1가구 2차 이상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2배 증과한다. 중고차 매입시 미납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승계제도도 폐지된다.

▲ 민방위제도 개선

임무수행-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사망한 민방위대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및 휴업보상금 지급제도를 신설했다. 민방위대원 신고의무위반 등에 대한 벌칙을 벌금-구류에서 과태료(30만원)로 전환한다.

## 법무부

### ▲ 형사기록의 열람 등사 청구권자 확대

재판확정기록과 형사처분완결기록에 대한 청구권자를 지금까지 변호인에 한정하던 것을 피고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해자등에 확대된다.

### ▲ 고소-고발 사건 지문채취 생략

지금까지 즉결심판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든 피의자에 대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고 무조건 지문을 채취했으나, 고소-고발 사건 중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처분사유에 해당하면 관련자 지문채취가 생략된다.

### ▲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비자) 입국허용

「9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 15일 이내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 대국민 음성정보제공 시스템(ARS)도입

재판기일이나 재판업무에 관해 궁금한 점을 문의할 때 법원에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 ▲ 형사법정 폐쇄회로 설치

법정 내에 폐쇄회로 TV를 설치, 법정소란을 제어하는 효과를 거둘 예정이다.

## 교육부

### ▲ 전교조해직교사 복직

해직 4년6개월여만에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1천4백여명이 내년 1학기부터 복직된다.

### ▲ 대학 종합평가인정제

대학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통과대학과 미통과대학으로 나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대학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으로 있다. 올해까지는 학과별 평가인정제만 실시

됐다.

#### ▲ 중학교의무교육 확대

군지역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도서 벽지 전학년과 군지역 1-2학년 학생에 대해 의무교육이 실시됐다.

### 교통부

#### ▲ 유류특소세 인상

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로 휘발유특소세는 1백50%로, 경유 특소세는 20%로 각각 인상된다.

#### ▲ 무임승차 부가운임 상향조정

무임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이 규정운임의 30배 이내까지 상향 조정되고 압표상에 대한 처벌도 상습범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 ▲ 보험 배상한도액 인상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이 사망은 1천5백만원까지, 부상은 6백만원까지, 후유장애는 1천5백만원까지로 각각 인상돼 8월부터 적용된다.

#### ▲ 교통요금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

시내버스-택시운임의 기준 및 요율 결정권한이 시장-도지사에게 7월부터 위임된다.

### 보사부

#### ▲ 진료기록부사본요구 가능

환자가 병원을 옮기기 위해 자신의 진료기록부(방사선필름, 임상검사)사본을 요구할때 병-의원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 ▲ 의료보험 혜택기간 연장

현재 1백80일로 제한된 의료보험 혜택기간이 65세이상 노인에게 한해 2백10일까지 연장된다.

### ▲ 보건기관 휴폐업 대응강화

병·의원이나 약국의 집단 휴·폐업이 예상될 때 해당 보건소장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보사부장관을 비롯 각 지방자치 단체장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불응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 유료양로원 참여확대

사회복지법인만이 유료양로원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업자의 참여도 허용된다.

### ▲ 결혼식장업 변경

그동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했던 결혼식장 등 의례식장 영업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되며 임대·수수료역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된다.

### ▲ 저소득층 지원강화

거택보호자의 경우 매월받는 생계보조금이 5만6천원에서 6만5천으로 시설보호자는 5만7천원에서 6만5천으로 각각 인상된다.

## 국방부

### ▲ 병역법개정

현행 독자에 대한 병역복무기간 단축제도와 방위소집제도를 폐지. 본인의 지원 또는 소집에 의해 현역병을 1년간 복무한뒤 예비역에 편입돼 1년6개월간 복무토록 하는 상근예비역제도와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 경비 감시 보호 국제협력 등 공익분야에 복무토록 하는 공익근무요원제가 도입된다.

### ▲ 군사시설보호법개정

민간인통제선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군사분계선 남방 20km 범위안에서 민통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업무를 간소화한다.

### ▲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

현행 33세까지의 복무연령제에서 군복무 종료후 8년까지만 복무토록 하는 복무 연한제로 개선된다. 또 군복무 미필자, 중졸미만자, 생계유지곤란자 등 예비군복무 부적격자는 예비군조직대상에서 제외된다.

### ▲ 군사기밀보호법개정

모든 국민이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기밀공개요청권」이 신설됐다. 군사기밀의 범위를 일반인에게 알려지지않은 것으로서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물건 등으로 한정해 군사기밀의 범위를 축소한다.

### ▲ 군인사법 개정

군간부의 전문성과 직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령 정년을 현행 49세에서 53세로, 대령 정년을 53세에서 56세로 이등상사는 50세에서 53세로, 일등상사와 준사관은 53세에서 55세로 각각 2~4년씩 연장된다.

## 노동부

### ▲ 남녀고용 차별에 대한 지도강화

현재 중업원 3백명이상 업체를 상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 유무에 대한 지도가 강화돼 2백~2백99명이상 사업체도 노사공동으로 위반사항을 점검해 개선해야 하며 5백명이상 업체중 적발업체는 내년 6월까지 시정을 완료해야 한다.

### ▲ 근로복지복권발행

중소기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공공근로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내년중으로 첫 「근로복지복권」이 발행된다.

### ▲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 상향조정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이 각각 7만 4천원과 3만 7천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고용부담 기초액도 13만8천원에서 14만9천원으로 인상된다.

## 경찰청

### ▲ 슬롯머신업 신규 재허가금지 및 고물영업허가제폐지

사행행위등 규제법이 개정돼 슬롯머신업에 대한 신규 및 재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장물거래 단속을 위해 시행되던 고물영업에 대한 허가제도 장물거래가 줄어들에 따라 폐지된다.

### ▲ 운전면허시험 주소지 응시제한 폐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면허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던 제한 조치가 풀려 전국 어디서나 응시가 가능하다.

### ▲ 지체 장애인에 대한 제1종 보통면허취득 허용

장애정도에 따라 2종 보통면허만 허용하던 것을 보조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해 진다.

### ▲ 교통법칙금 납부 전산화

교통 법칙금 납부 대장의 수작업 처리를 전산화해 납부 상황에 대한 확인절차가 간소화된다.

### ▲ 고속도로 갓길운행차량 벌점 상황조정

현행 벌점 10점에서 30점으로 상황조정돼 1회위반시 면허정지 30일이 부과된다.

### ▲ 구류선고자 호송시 포승금지

법원으로부터 구류를 선고받은 범법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할 때 도주우려가 없는 한 포승으로 묶거나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 총무처

### ▲ 행정 음부즈맨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국무총리 소속의 「고충처리 위원회」에 제출하면 민간인들로 구성된 민원음부즈맨이 그 적정성여부를 판단, 행정에 반영.

▲ 공무원 하위직 장기근속공무원 자동승진제 확대

현재 9급에서 8급까지 8년이상 장기 근속시 자동승진케 되어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는 8급에서 7급까지로 확대.

▲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점 혜택 확대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 현재 7개분야(토목, 기계, 전기, 화공, 농업, 환경, 건축)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부여하던 가산점을 전 기술종으로 확대.

▲ 만원처리 1회 방문제법정화

지금까지 내무부지침으로 돼있던 민원처리 1회방문제가 「민원사무기본법」이 통과됨으로써 전부터 민원처리 지침으로 확대.

**공무원 처우**

▲ 공무원 처우개선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6.2% 인상된다. 초과근무수당이 대폭 현실화대 우편집배원의 경우 월 11만4천원에서 23만3천원으로 철로원은 월 16만5천원에서 32만9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하위직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이 하루 3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오르고 매식비도 1식기준 2천5백원에서 4천~5천원으로 인상된다. 초중등 교원의 교직수당이 2만원 올라 월 15만원이 되고, 군인·경찰·세무대학생의 주부식 단가를 올려 경찰의 경우 1일3식 기준 2만1천85원으로 현실화된다.

**세 금**

▲ 소득세율 조정

세율이 5~50%에서 5~45%로 단계별 인하조정

▲ 인적공제액 상향조정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이 연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조정되고 장애인 공제액도 연48만원에서 54만원으로 인상.



**▲ 교육비공제 대상확대**

종전 직계비속중 초·중·고교의 교육비를 2인까지 공제했으나 자녀수의 제한이 없어짐.

**▲ 양도소득세 비과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시 1억원이내면 감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차하고 거주하고 분양받은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아니함. 다가구주택을 공동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 판정.

**▲ 상속세 공제액 조정**

장례비공제는 연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기초공제는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1억원에다 결혼연수 1년당 1천2백만원씩이 공제되며 보험금공제액도 7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 증여세 공제액 조정**

직계비속간 증여공제액이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배우자간 증여공제액도 3천만원에다 결혼연수 1년당 3백만원씩으로 인상 됐으며 보험금공제도 1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

**▲ 2촌이상 직계존비속 상속 증여시 세액가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상속, 증여하는등 한단계 건너뛰어 부를 세습할 경우 20%를 가산.

**▲ 특별소비세율 조정**

전기세탁기 10%, 지프형 승용차 10~20%, TV20%, 등유10%, 불링용구 25%,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용품 25%등으로 조정

**환 경**

**▲ 쓰레기증량제**

4월부터 쓰레기 수수료 증량제가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된다. 시범 실시지

역에서는 통반장을 통해 배포되는 관급 규격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버려야 하며, 슈퍼마켓등에서 판매하는 「추가봉투」의 가격은 기본봉투의 2배로 책정된다. 봉투가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되며, 수거로 부담이 이제까지의 3배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면실시는95년부터이다.

#### ▲ 환경개선부담금

유통·소비분야의 일정규모 이상시설물에 한해 부과해왔으나 94년부터는 경유자동차에도 부과한다.

#### ▲ 폐기물부담금제

화장품 과자제품 부동액 합성수지 등 9종 15개 품목이 새로 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됐다. 또 예치금 대상품목이던 살충제 부탄가스제품 등이 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전환됐다.

### 산업 및 무역

#### ▲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공장입지 확보난 개선

#### ▲ 혁제의류 냉동가자미 등 46개 품목 수출자유화

#### ▲ 신용장개설·통지, 수출입승인, 수출입추천 및 비자업무등 수출입 기본업무자동화

#### ▲ 1백20개 품목에 대한 수출검사제도폐지

#### ▲ 대미 섬유기본쿼타의 5%를 개방쿼터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별도배정기준 신설

#### ▲ 염색 또는 가공기술 수반 원사

직물 제조업과 편조업, 기성복제조업, 점토벽돌제조업, 가족의복제조업, 기타 섬유제품제조업, 도산매업, 보관 및 창고업, 첨단기술 대자인 연구개발 사업 등 해외직접투자 제한업종 해제.

## 농수산

### ▲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농산물(배, 복숭아, 단감, 홍차, 생사, 호프)축산물(신선돼지고기 신선닭고기 어린면양고기)수산물(복어 굴비 뱀장어 명란 새우 바지락)

### ▲ 양정제도

양곡 가공업 허가에서 등록제, 양곡판매업 허가에서 신고제로 전환. 생산자의 양곡직접 판매 자유화. 양곡직접판매 자유화. 양곡관리기금, 농어촌발전기금 폐지.

### ▲ 축산물 등급판정제도 서울 부산서 전면 실시.

▲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매인의 도매업 금지. 서울 서남권, 부산제2, 광주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설.

### ▲ 수입농수산물 반드시 한글로 표시

**가는길 즐겁게, 오는길 즐겁게**